##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10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박수현·양문석·박용갑

서삼석 · 임오경 · 이개호

이정문・황 희・조계원

정준호 · 조인철 · 어기구

임호선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여행상품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되는 여행상품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운영할 수 있다.
  -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 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로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여행자와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여행상품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되는여행상품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권익을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과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수있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로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여행자와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